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환자의 진단서 등 교부〉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21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3. 27.
- (3) 회 부 일 : 2025. 3.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진단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이들이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가족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신청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제17조(진단서 등) ① ----- ----- ----- ----- ----- -----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 ----- ----- ----- ----- ----- ----- -----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 ~ ⑤ (생략)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상 환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겐 교부할 수 있고, 이마저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사실혼 배우자’)은 환자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 또는 유족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법률에서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하고 있고,¹⁾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²⁾

-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르거나 근거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민법」에 따를 경우 배우자는

-
-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1조(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법 제54조·제55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퇴직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영 제9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유족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특례급여 외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유족급여의 청구 및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중 청구인 제출서류: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부검감정서 1부)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가 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는 배우자를 1순위로 두고 있어,³⁾ 사실혼 배우자는 대부분의 경우 유족연금 또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됨.

□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공인된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요구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사실혼 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다수의 현행법령에서 ‘사실혼’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린 법령은 없으며, 판례는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 관념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⁴⁾라고

3) 「공무원연금법」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군인연금법」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4) 대법원 2001.4.13.선고 2000다52943 판결

판시하고 있으나 그 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음.

-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서 비롯되는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⁵⁾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실혼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⁶⁾
- 예외적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⁷⁾에서는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홈페이지 공고, 사실조사 등의 단계를 거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⁸⁾

5)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6)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은 우리나라가 여러 특별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연금이나 보험금의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연금을 받기 위해 과거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빈도가 높음(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등: 김미경, '사실혼 증명 절차에 대한 제언', 재산법연구 제39권제4호, 2023.2. 재인용)

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② 법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통지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희생자 및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 희생자 및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이처럼 사실혼관계 존부는 각종 서류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 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판단될 정도로 복잡한 사안으로, 의사 등이 일반적인 구비서류만으로 의료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실혼관계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⁹⁾ 필요시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희생자의 친족 또는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의3(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1. 신청서 또는 제출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수정 요청
2. 사실조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청 사실의 통지 및 의견 접수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 사실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③ 신청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5 서식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의견서에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2제2항,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서류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열람 및 사본 제공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의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 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영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2. 법원의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사회보장사업의 공적 지원 대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실무상 사실혼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로 ‘사실혼관계 인우보증서’¹⁰⁾ 또는 ‘공증서’ 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과 달리, 진단서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진단서 등의 교부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사실혼 배우자임을 판단하는 의사 등은 주로 민간인이며,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경우의 입증서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보장사업에서 사실혼 배우자 입증서류 예시 >

사실혼 배우자 대상포함 사업	사실혼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1.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 보증인2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2.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공증, 법원 판결문, 정부설치위원회 의결자료 중 1부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1. 시술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3.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씩 4.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 4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예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의 판결문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경우

10) 인우보증서: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척, 가족, 동료 등이 보증하는 서류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수정)

-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은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배우자의 범위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등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시행일 조정이 필요함(공포한 날 →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완)

- 진단서 등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자료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혼인관계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대한의사협회(반대)

- 사실혼에 대한 정해진 구비서류나 증명기준이 모호하므로 의료기관에서 객관적 사실확인이 어려우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거부할 수 없어 곤란을 겪을 수 있음.

- 환자의 진단서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이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분쟁 시 관리 주체인 의료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소지가 있어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4) 대한한의사협회(반대)

- 「공무원연금법」 등 법률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를 입증하는 일반적인 서류는 없음.
- 진료현장에서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서 등의 발급거절이 어려운데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추후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한 것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대한병원협회(반대)

-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사례를 볼 때 급여를 청구하는 측이 사실혼 관계에 대해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부여하고, 지급 주체가 1차적으로 이를 판단하되, 이 판단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등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진단서 등 교부주체인 의료기관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판단·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진단서 등 교부를 거절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음.
- 아울러 현행법상으로도 연금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주체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각 지급주체가 연금 및 유족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지급주체 스스로 진단서 등을 확보할 수 있음.
- 만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실상 혼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제출서식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6)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환자의 기록 발급 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유이며,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